

부산광역시사하구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28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1999. 6. 29
제 출 자 : 사하구청장

1. 제안이유

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는 주한미군과 지역사회간의 올바른 이해촉진 및 상호협조 등 유대강화를 위하여 제정('88.5.1)되었으나
우리구 지역여건에서는 현실에 맞지 않고 존속 실효성이 없으므로
자치법규 정비차원에서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본조례를 폐지코자 함

2. 주요골자

부산광역시사하구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 폐지

부산광역시사하구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

부산광역시사하구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